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671

발의연월일: 2024. 8. 8.

발 의 자: 박충권·조배숙·엄태영

김정재 • 박성훈 • 김용태

강선영 • 고동진 • 최수진

서지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간첩죄는 그 적용대상이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되어, 군사·방산 기밀 등을 외국에 유출한 경우에는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음. 이는 현재와 같은 다원화된 국제환경에 맞지 않고, 특히 정보전 쟁이 치열한 국제경제환경에는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됨.

미국을 비롯해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에 해가 되거나 타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해 중형에 처하고 있고, 이는 적국이 아닌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기밀을 유출한 경우에도 해당됨.

이에 「형법」상 간첩죄에 있어서 '적국'의 개념을 시대 변화에 맞게 '적국, 외국'으로 변경하고, '외국인 단체' 및 '외국인'를 위하여 간첩한 경우도 간첩죄로 의율하도록 변경하여,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간첩행위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려는 취지임(안 제98조).

법률 제 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 중 "敵國을"을 "적국, 외국을"로, "敵國의"를 "적국, 외국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敵國에"를 "적국, 외국, 외국인, 외국인단체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외국인, 외국인 단체를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 외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98條(間諜) ① <u>敵國을</u> 爲하여 間	第98條(間諜) ① <u>적국, 외국을</u>
諜하거나 <u>敵國의</u> 間諜을 幇助	<u>적국,</u> 외국의
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7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②軍事上의 機密을 <u>敵國에</u> 漏	② <u>적국, 외국,</u>
泄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외국인, 외국인 단체에
<u><신 설></u>	③ 외국인, 외국인 단체를 위하
	여 간첩하거나 적국, 외국의 간
	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
	<u>다.</u>